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15

발의연월일 : 2021. 5. 27.

발 의 자 : 이병훈・양정숙・김두관

김영호・강준현・조오섭

이워택 • 이형석 • 양향자

송갑석ㆍ허 영ㆍ신영대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,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 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·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·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 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'국가균형발전 기여도'를 추가함으로써,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

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3호부터 제5호까지"를 "제4호부터 제6호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국가균 형발전 기여도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)
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
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	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
구개발기관의 선정) ① (생	구개발기관의 선정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(이	
하 "선정평가"라 한다)를 거쳐	
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	
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	
다. 다만, 해당 국가연구개발사	
업의 목적·성격을 고려하여	
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	- <u>제4호부터 제6호까지</u>
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	
아니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
	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
	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
<u>3.</u> ~ <u>5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6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5
	호까지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